

제24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스토킹범죄
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9 월 13 일

여 수 시 장

2024. 9. 13. [날짜]



여수시 조례 제2128호

붙임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여주시 스토킹범죄 ·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스토킹예방”을 “스토킹 · 데이트폭력 예방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를 따른다”를 “다음과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스토킹”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
2. “데이트폭력”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(연인관계 전·후 불문)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· 정서적 · 경제적 · 성적 · 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스토킹범죄를”을 “스토킹 · 데이트폭력을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스토킹범죄”를 “스토킹 · 데이트폭력”으로, “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,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”를 “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·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관련 단체 등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스토킹범죄”를 “스토킹 · 데이트폭력 범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스토킹범죄”를 각각 “스토킹 · 데이트폭력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스토킹범죄”를 “스토킹 · 데이트폭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

조 제4호 중 “스토킹범죄”를 “스토킹 · 데이트폭력”으로, 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1. 스토킹 ·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2.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
3. 피해자 상담,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

제7조제2항 중 “스토킹범죄”를 “스토킹 · 데이트폭력 범죄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스토킹범죄”를 “스토킹 · 데이트폭력 범죄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스토킹범죄 예방”을 “스토킹 · 데이트폭력 범죄예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</u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 <u>스토킹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<u>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를 따른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u>여수시 스토킹범죄·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</u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스토킹 · 데이트폭력 예방 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“<u>스토킹</u>”이란 「<u>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<u>스토킹범죄</u>를 말한다.</p> <p>2. “<u>데이트폭력</u>”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(연인관계 전·후 불문)에서 발생하는 언어적·정서적·경제적·성적·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.</p>

제3조(시장의 책무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,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3.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
----- 스토킹·데이터폭력을 -----

-----.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
---- 스토킹·데이터폭력 -----
-----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·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관련 단체 등과 -----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-----
- 스토킹·데이터폭력 범죄 -----

-----.

1. 스토킹·데이터폭력 -----

2. 스토킹·데이터폭력 -----

3. 스토킹·데이터폭력 -----

4. ----- 스토킹·데이터폭력 -----

--

② (생 략)

제6조(사업)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

2.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

3.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업

4.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위탁 등) ① (생 략)

② 시장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신고체계의 마련)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업) ----- 스토킹·데이트폭력 -----
-----.

1. 스토킹·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
2.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

3. 피해자 상담,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

4. ----- 스토킹·데이트폭력 필요한 -----

-----.

제7조(위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스토킹·데이트폭력 범죄 -----

-----.

제8조(신고체계의 마련) -----
스토킹·데이트폭력 범죄 -----

-----.

제9조(비밀 누설 금지)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비밀 누설 금지) -----
-- 스토킹 · 데이트폭력 범죄예방 -----

----.